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-127호

「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」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6-14호) 제4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인출권 조정 환율(SDR)을 공고합니다.

2026. 9. 18.

우정사업본부장

1. 개요

국제우편의 특별인출권 조정 환율(SDR)을 공고하여 보험료 및 손해 배상액, 반송료 등에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

2. 내용

가. 특별인출권 환율

통화명	적용 환율	화폐 단위
SDR(Special Drawing Rights)	2,012	원(Won)

나. 적용 일자 : '26. 10. 1.(목)

3. 문의 :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(044-200-8288)